
2017년도 하반기 국민·공무원 제안 공개 모집 계획

2017. 7.



행정관리담당관

I 개요

1. 추진배경

- 국민·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정책 및 행정 제도 개선에 반영
-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·개발하여 행정의 능률화, 경제화 도모

2. 추진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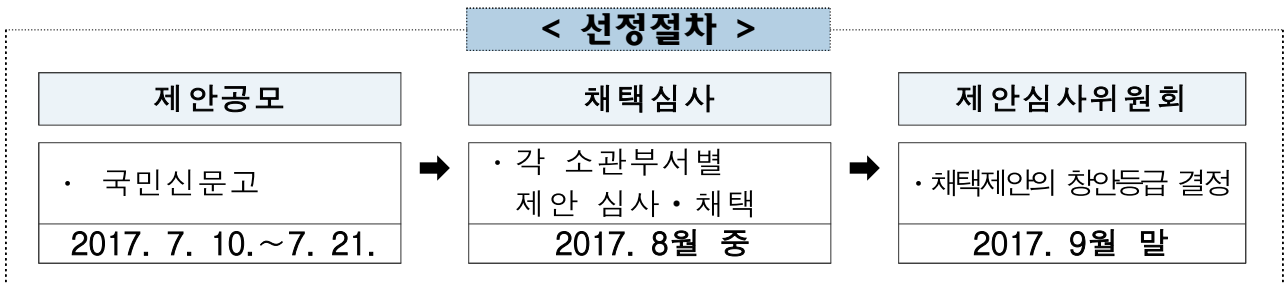
- 「국민 제안 규정」
-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
- 「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」
- 『2017년도 국민·공무원 제안 운영 계획』(경기도교육청)
- 『2017년 국민행복제안·참여 운영실태 점검계획』(국민권익위원회)

II 운영계획

1. 국민·공무원 제안 공개 모집

- 응모분야
 - 교육과정 정상화·다양화·특색화 방안/진로·직업교육 강화 방안/학습경험의 다양화 방안
 - 학교자치시스템 구축 방안/민주적 학교문화 실현 방안/시민의식 강화 방안/학생·교원 인권 존중 방안
 - 개별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/교육 격차 해소 방안/학생의 건강한 삶 보장 방안/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방안
 - 지속가능한 학교혁신 방안/교육공동체 혁신역량 강화 방안/교육 협력체제 강화 방안/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
 - 역량중심 인사제도 개선 방안/현장지원 시스템 개선 방안/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/공감하는 지원행정 방안
 - 기타 경기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
- 응모자격 :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대한민국 국민(경기도민)

- 응모기간 : 2017. 7. 10.~7. 21.
- 응모방법 :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
 - 국민제안 : <http://www.epeople.go.kr/jsp/user/UserMain.jsp>
 - 공무원제안 : <https://www.epeople.go.kr:8055/jsp/AdminLogin.jsp>
- 추진절차



2. 국민·공무원 제안 심사

- 심사방법
 - 접수된 제안의 소관부서 분류 후 소관부서의 장이 채택 여부 결정
 - 채택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창안등급 결정
 -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여 중앙우수제안 추천
- 심사기준
 - 심사점수가 **70점 이상일 경우 채택**
 -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심사기준 동일

〈국민·공무원 제안 심사기준〉

심사항목(배점)	심사 기준
실시 가능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실여건(상황)을 고려할 때, 실제 실시(적용) 가능한가?
창의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? •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, 전부 모방하였는가?
효율성 및 효과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?
적용 범위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 행정기관(중앙·지방)에 적용할 수 있는가? • 일부 행정기관·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? •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?
계속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? •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?

- 심사 제외대상(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)
 -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
 -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
 -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 -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 -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·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
 -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III 포상계획

1. 포상근거

- 「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」 제12조(시상 및 특전)
- 「경기도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」 제7조(공적상)
-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 제18조(인사상 특전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 3(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)
-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제15조(특별승급)

2. 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(경기도교육청)

구 분	특별상	우수상	우량상	장려상	등급미부여
심사위원 평균 점수	95점 이상	90점 이상	85점 이상	80점 이상	80점 미만
금 액	200만 원	100만 원	50만 원	20만 원	없음

※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미포상

3.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(행정자치부)

- 경기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 제안 중 자체우수제안 선정, 행정자치부로 자체우수제안 추천
- 행정자치부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, 국민평가,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 결정
- 중앙우수제안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포상 및 인사 특전 부여

구 분	금상	은상	동상	장려상
부상금	500~800만 원	300~500만 원	100~300만 원	50~100만 원
인사특전	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			특별승급

※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행정자치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특전 부여

4. 인사상 특전

-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교육감 표창 수여
-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,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(공무원)에게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의 인사 특전 부여 가능

※ 특별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나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(승진소요최저 연수 미달, 상위직급 결원 부족 등)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후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 부여 가능

창안등급	인사상 특전의 종류	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
금상 · 은상 · 동상	특별승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• 교육공무원
	특별승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승진을 실시하기 곤란한 교육공무원
장려상	특별승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력직공무원 • 특수경력직공무원

<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>

5. 제안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

□ 교육훈련시간 인정

교육·학습유형		인정시간	최대 인정시간	인정근거
제안 (제안규정에 의한 입상)	입상 (대내·외)	건당 10시간 (대외입상 10시간 추가)	50	결과 확인 공문

※ 인정근거 :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」(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, 2017. 2. 2.)

□ 제안 채택자·실시자 공동포상

- 제안자와 함께 채택·실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하여 제도 개선의 동기 부여
- 채택된 제안이 중앙우수제안에 입상할 경우 채택자·실시자에게 교육감 표창 수여

□ 「제안왕」선발 및 포상

- 국민·공무원 제안접수 건수, 채택실적, 창안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, 최고점 획득 제안자를 ‘제안왕’으로 선발
- 제안왕에게는 교육감 표창 수여 및 부상금 지급
- 다수의 제안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2년 연속 제안왕 수상 불가 (차순위자에게 수여)

평가항목		배점
접수건별	1~3건	10점
	4~6건	20점
	7~9건	30점
	10건 이상	40점
부서채택		1건당 10점
창안등급별	장려상	20점
	우량상	30점
	우수상	40점
	특별상	50점

※ 동점자 처리 : 제안접수건수, 부서제안채택률, 창안등급 순

IV 행정사항

1. 홍보 강화 (전 기관)

-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각급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문 게시
-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안내장 발송 및 홈페이지 알림창 게시 등 적극 홍보 협조

2. 심사부서 협조 사항 (본청 각 부서)

- 신속한 제안 접수 및 처리기한 준수
 - 지정된 부서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닐 경우 사유 및 해당 부서를 명시하여 즉시 부서재지정/재분류 요청
 -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처리 완료
 - ※ 국민권익위원회 「2017년 국민행복제안 운영실태 점검 계획」의 점검항목
- 제안 심사 처리 내실화
 - 대부분 비전문가인 제안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안내용 중 일부 보완·개선 후 정책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 요구
 - ※ 『국민생각함(idea.epeople.go.kr)』을 활용한 제안 숙성(보완·개선) 가능
 - 제안 심사 시 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른 채택 여부의 면밀한 검토
- 제안 검토의견의 신중한 작성 및 회신
 - 부서장 책임 하에 불채택 결정 시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 통보
 - 답변이 늦거나 지나치게 짧은 단답식 검토 지양, 불채택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
- 채택제안 의무 실시
 -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고,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 실시
 -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